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2. 제·개정 이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행청구사유 추가

3.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주택연금 보증채무 이행청구사유 추가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5년 2월 18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
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장석진 차장(tjrwls1202@hf.go.kr)
- 전화번호 : 051-663-8913
- 팩스번호 : 0505-036-0953

붙임: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끝.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개정 전후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장 보증채무이행	제3장 보증채무이행	
제1절 이행청구	제1절 이행청구	
제15조(이행청구사유)	제15조(이행청구사유)	
① 보증채무이행 청구사유는 「공사법시행령」 제28조의2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와 같다. 이때 제7호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신탁계약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 또는 배우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담보주택에 대하여 채권 확보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가 위반사유의 해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u><신 설></u>	① 보증채무이행 청구사유는 「공사법시행령」 제28조의2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와 같다. 이때 제7호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u>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 또는 배우자가 「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가목1)부터 3)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 개별인출금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u> ② ~ ④ (현행과 같음)	이행청구 사유 추가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부 칙 (10)</u>	
	<u>이 규정은 2025년 3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부칙 신설